

대통령령 제 호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장에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각급 학교의 운영·관리에 관한 지원 등) 교육감은 학교 행정업무 경감을 통해 학교의 교육활동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법 제35조제1호에 따른 각급 학교의 운영·관리에 관한 지원 업무를 전담하는 기구를 교육지원청에 두거나 직속기관으로 설치할 수 있다.

별표 2 및 별표 3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영은 2026년 5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본청에 두는 보조·보좌기관의 직급기준 등(제9조제1항 관련)

구분	부교육감	실장	국장	과장·담당관
서울특별시 교육청 및 경기도 교육청	「국가공무원법」 제2조의2에 따른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또는 장학관	「국가공무원법」 제2조의2에 따른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장학관 또는 3급 일반직 지방공무원	장학관 또는 4급 일반직 지방공무원
그 밖의 시·도 교육청	「국가공무원법」 제2조의2에 따른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또는 장학관		장학관 또는 3급 일반직 지방공무원	장학관 또는 4급 일반직 지방공무원

비고

1. 위 표의 과장·담당관의 직급기준에도 불구하고 기획업무를 담당하는 1명의 담당관은 3급 또는 4급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보(補)할 수 있으며, 과·담당관 단위의 기획업무 기구의 장 밑에는 1명(경기도 교육청은 2명)의 4급 일반직 지방공무원을 둘 수 있다.
2. 서울특별시 교육청과 경기도 교육청의 과장 및 담당관 중 1명은 3급 또는 4급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으며, 과장 또는 담당관 밑에 4명(경기도 교육청의 경우에는 5명)의 범위에서 4급 일반직 지방공무원을 둘 수 있다.
3. 서울특별시 교육청과 경기도 교육청 외의 교육청은 과장 또는 담당관 밑에 2명의 범위에서 4급 일반직 지방공무원을 둘 수 있다.
4. 제8조제2항에 따른 감사기구는 과·담당관 단위로 한다. 이 경우 위 표의 직급기준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 교육청, 경기도 교육청의 감사기구의 장은 3급 상당 개방형직위로, 그 밖의 시·도 교육청의 감사기구의 장은 3급 또는 4급 상당 개방형직위로 보할 수 있으며, 감사기구의 장 밑에는 1명(경기도 교육청은 2명)의 4급 일반직 지방공무원을 둘 수 있다.

교육지원청의 기구 설치기준 및 기관 직급기준(제11조제1항 관련)

1. 기구 설치기준

구분	국	과(담당관)·센터
가. 인구가 100만 명 이상이거나 학생이 10만 명 이상인 경우	3국	
나. 인구가 50만 명 이상이고, 학생이 5만 명 이상인 경우	2국	
다. 인구가 30만 명 이상이고, 학생이 3만 명 이상인 경우		4과(담당관), 2센터
라. 인구가 15만 명 이상이고, 학생이 2만 명 이상인 경우		3과(담당관), 2센터
마. 인구가 10만 명 이상이고, 학생이 1만 명 이상인 경우		2과(담당관), 2센터
바. 인구가 10만 명 미만이거나 학생이 1만 명 미만인 경우		2과(담당관), 1센터

비고

1. 위 표에서 정한 설치 기준은 상한으로 보며, 교육감은 교육지원청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교육지원청의 기구를 조정할 수 있다.

2. 인구수는 전년도 3월 31일을 기준으로 교육지원청이 관할하는 시·군 및 자치구의 주민등록표·국내거소신고인명부 및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수를 합산하여 산정하고, 학생 수는 전년도 4월 1일을 기준으로 각급 학교(「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및 「영재교육진흥법」에 따른 영재학교를 말한다)의 학생 수를 합산하여 산정한다.

2의2. 위 표의 설치기준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교육지원청은 위 표의 해당 구간의 상위 구간의 기준을 적용하여 기구를 증설할 수 있다.

가. 해당 구간에서 인구수와 학생 수가 2년간 연속하여 증가할 것

나. 가목에 따른 최종 인구수와 최종 학생 수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된 인구수와 학생 수를 초과할 것

1) 인구수: 해당 구간의 최소 인구수 + [(해당 구간의 상위 구간의 최소 인구수 - 해당 구간의 최소 인구수) × $\frac{90}{100}$]

2) 학생 수: 해당 구간의 최소 학생 수 + [(해당 구간의 상위 구간의 최소 학생 수 - 해당 구간의 최소 학생 수) × $\frac{90}{100}$]

2의3. 위 표의 설치기준에 합치되도록 기구를 감축해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이 경우 기구의 감축은 해당 연도의 다음 해 6월 30일까지 해야 한다.

가. 위 표 가목에 해당하는 교육지원청 관할구역의 인구수와 학생 수가 각각 해당 구간의 최소 인구수의 100분의 90과 최소 학생 수의 100분의 90에 2년간 연속하여 미달한 경우

나. 위 표 나목부터 마목까지에 해당하는 교육지원청 관할구역의 인구수가 해당 구간의 최소 인구수의 100분의 90에 2년간 연속하여 미달하거나 학생 수가 해당 구간의 최소 학생 수의 100분의 90에 2년간 연속하여 미달한 경우

3. 위 표의 설치기준에도 불구하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다른 교육지원청 사무의 일부를 처리하는 교육지원청은 2과(담당관) 이내의 기구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으며, 그 설치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4. 위 표의 설치기준에도 불구하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제3항에 따라 통합된 교육지원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구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2. 기관 직급기준

구분	직급
가. 국장	장학관 또는 4급 일반직 지방공무원
나. 과장(담당관)	장학관 또는 5급 일반직 지방공무원
다. 센터장	장학사 또는 6급 이하의 일반직 지방공무원

비고

1. 위 표의 직급기준에도 불구하고 제6조제4항에 따른 과의 설치기준을 충족하는 센터의 경우 그 센터장은 장학관 또는 5급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2. 제1호다목의 구분에 해당하는 교육지원청이 제1호다목의 설치기준에도 불구하고 과(담당관)를 3개(센터장이 장학관 또는 5급 일반직 지방공무원인 센터가 있는 경우 해당 센터는 과로 보아 계산한다) 이하로 설치한 경우 위 표의 직급기준에도 불구하고 5급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여야 하는 과장(담당관) 중 1명은 4급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12조의2(각급 학교의 운영·관리 에 관한 지원 등) 교육감은 학 교 행정업무 경감을 통해 학교 의 교육활동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법 제35조제1호에 따 른 각급 학교의 운영·관리에 관 한 지원 업무를 전담하는 기구 를 교육지원청에 두거나 직속기 관으로 설치할 수 있다.</u>